

제2021-57회 시정권고
검 토 보 고

2021. 3. 26.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전 문 위 원 오 진 해

【 목 차 】

I. 심의대상	3
II. 관련법령 및 심의기준	3
III. 검토내용	6
IV. 종합의견	9
[별지] 심의의결(안)	10

I. 심의대상

금번 심의안건은 한국저작권보호원(이하 “보호원”이라 함)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발견한 불법복제물에 대하여 보호원이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시정을 권고하기 위하여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것으로, ‘도도파일’ 등 12개 온라인 서비스의 이용자들이 게시한 43건의 복제물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해당 이용자들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에 관한 심의임.

[심의 요약]

순번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온라인서비스명)	저작물 유형	게시물	시정권고 유형
1	도도파일	영상(영화)	11건	불법복제물 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2	파일조	영상(영화)	3건	
3	메가파일	영상(영화)	1건	
4	파일노리	영상(영화)	6건	
5	파일몽	영상(영화)	3건	
6	피디팝	영상(영화)	2건	
7	찐플	영상(영화)	4건	
8	온플레이	영상(영화)	1건	
9	파일시티	영상(영화)	2건	
10	파일썸	영상(영화)	6건	
11	티플	영상(영화)	1건	
12	빅파일	영상(영화)	3건	
합계			43건	

II. 관련 법령 및 심의 기준

1. 저작권법령

◆ 저작권법

제133조의3(시정권고 등)

① 보호원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불법복제물등이 전송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정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1. 불법복제물등의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
2.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
3. 반복적으로 불법복제물등을 전송한 복제·전송자의 계정 정지

②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권고를 받은 경우에는 권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제1항제3호의 권고를 받은 경우에는 권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조치결과를 보호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보호원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제1항에 따른 권고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133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명령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제133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하지 아니한다.

제133조의2(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복제물등의 삭제명령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저작권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복제물 또는 정보,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하게 하는 프로그램 또는 정보(이하 "불법복제물등"이라 한다)가 전송되는 경우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불법복제물등의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
2.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

◆ 저작권법시행령

제72조의6(시정권고 절차 등)

① 심의위원회는 법 제133조의3제1항에 따라 보호원으로부터 심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보호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내에 심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두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법 제133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요청일부터 7일
2. 법 제133조의3제1항제3호의 경우: 요청일부터 14일

② 보호원은 법 제133조의3제1항에 따른 시정권고를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위법 행위의 내용
2. 권고 사항
3. 시정 기한
4. 시정권고 수락거부 시의 조치

③ 제2항에 따른 시정권고의 통지를 받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보호원에 서면으로 조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1. 시정권고에 따라 조치한 내용
2. 시정권고 이행 일자
3. 시정권고의 수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④ 심의위원회가 법 제133조의3제1항제3호를 심의하는 때에는 제72조의3제1항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규정

제23조(경고·삭제 등) 보호원이 법 제133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불법복제물등의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 또는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 권고를 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경우에 심의위원회는 제15조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제15조(경고·삭제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법 제133조의2제1항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해 불법복제물등의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 명령 또는 불법복제물등의 삭제·전송 중단 명령을 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경우에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1. 복제·전송된 불법복제물등이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인지 여부
2. 복제·전송자에게 불법복제물등의 복제·전송에 관한 정당한 권원이 있는지 여부
3.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해 동일·유사 불법복제물등에 관한 위원회의 시정권고가 있었는지 여부
4. 경고·삭제 등의 명령 이외 다른 대체적 수단이 있는지 여부
5. 저작권자가 저작물 보호에 관한 요청을 하는 등 보호노력을 하였는지 여부
6. 불법복제의 대상이 된 저작물의 유형·정품가격·선호도 등 시장에 미치는 영향
7. 사회적·국제적인 환경 등에 따른 특별한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8.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Ⅲ. 검토 내용

가.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인지 여부

심의 안건인 복제물은 모두 상업적인 목적으로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는 영상저작물(영화)로 창작자가 자신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하여 공중이 이를 감상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등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인 저작물에 해당될 수 있다고 보임.

안건번호 제2021-29814호~29853호(순번 1번~40번)는 웹하드, 모바일 웹하드 사이트에서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고 있는 국내외 최신 영상저작물(영화)임.

나. 복제·전송자에게 정당한 권원이 있는지 여부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르면 보호원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불법복제물등이 전송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 시정 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는 온라인을 통한 불법복제물의 유통이 매우 빠른 속도로 확산된다는 측면에서 보호원으로 하여금 즉각적으로 이러한 불법복제물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하여 시정권고를 하도록 규정한 것이라고 할 것임. 따라서 저작권법 제103조1)에 따른 저작권자등의 복제·전송 중단요청과 달리 보호원은 권리자의 위임이나 요청이 없더라도 불법복제물 확산을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시정을 권고할 수 있음.

1) 제103조(복제·전송의 중단) ①온라인서비스제공자(제102조제1항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서비스를 이용한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에 따라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자신의 권리가 침해됨을 주장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권리주장자"라 한다)는 그 사실을 소명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그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을 중단시킬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금번 심의 안건인 복제물의 경우에는 모두 저작권자가 상업적인 목적으로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저작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작권자 등 권리자가 아닌 개별 이용자들이 온라인을 통하여 저작물을 복제·전송할 수 있는 권원은 없는 것으로 보임.

따라서 금번 심의 안건 복제물의 복제·전송자들이 정당한 권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복제물 파일의 업로드 등으로 각 저작물을 전송하는 행위는 저작권자의 복제권 및 공중송신권 침해에 해당될 개연성이 높다고 할 것임.

다. 대체적 수단 여부 및 권리자의 보호노력 여부

시정권고는 온라인에서 행하여지는 불법복제물 등의 복제·전송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일정한 시정조치를 하게 하려는 것으로서, 강제적인 방식이 아닌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자율적 조치를 유도한다는 의미가 있음.²⁾

또한 저작권자 등 권리자에 의한 적극적인 권리행사로 저작권 분쟁이 다수 발생하는 상황에서 시정권고는 온라인을 통한 저작물의 복제·전송을 둘러싸고 권리자 등과 온라인서비스 이용자들 사이의 법적인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불법복제물을 삭제·전송 중단하도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방지하고, 불법복제물을 게시한 인터넷 이용자들이 저작권법을 준수하도록 유도하는 동시에 건전한 저작물 유통질서를 확립한다는 측면에서 공공의 이익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음.

2)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강승규의원 대표발의) 검토보고서(2009. 3.),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 26면.

금번 심의대상 복제물에 대하여는 저작권자가 저작권법 제103조에 따라 직접 복제·전송의 중단을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요청할 수 있기는 하지만, 시정권고 제도는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자율적 시정기회를 부여하는 것으로 저작권법 제103조와는 그 취지를 달리하는 것이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공공의 이익에 기여하는 측면을 고려할 때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음.

라. 저작물 시장에 미치는 영향 및 특별한 보호필요성

심의 안건인 복제물은 모두 저작권자가 상업적인 목적으로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저작물로서 온라인을 통한 불법복제물의 유포는 합법저작물 시장을 위축시켜 건전한 저작물 유통환경을 파괴하는 동시에 저작권자에게도 심각한 정신적 또는 경제적 피해를 야기하는 것이므로 시정을 권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음.

마. 일반적인 모니터링 의무 부과 금지와의 관계

저작권법 제102조 제3항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면책규정에 따른 책임 제한과 관련하여 일반적인 모니터링 의무나 적극적인 조사 의무가 없음을 선언하고 있음.³⁾ 여기서 보호원의 시정권고가 반복하여 동일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내려질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사실상 일반적인 모니터링 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오해될 여지가 있음.

그러나 시정권고는 위에서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자율적 시정기회를 부여하는 것일 뿐 어떠한 일반적인 모니터

3) 저작권법 제102조 제3항: 제1항에 따른 책임 제한과 관련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자신의 서비스 안에서 침해행위가 일어나는지를 모니터링하거나 그 침해행위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조사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링 의무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부과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 다만 실제 시정권고 과정에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일반적인 모니터링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오인되지 아니하도록 운영에 신중을 기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할 것임.

IV. 종합 의견

순번 1번~40번 {‘파일썸’ 사이트의 ‘[중점](영화)툼과 제리 (2021) [긴급]’ 등 43건의 게시물}는 불법 복제한 영상저작물(영화)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으로 저작권법 제 133조의3에 따른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의결(안)]

온라인서비스 제공자	게시물	의결주문(안)	비고
‘파일썸’ 등 12개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중점](영화)툼과 제리 (2021) [긴급]’ 등 43건 (순번1번~40번)	[별지] 기재 심의의결(안)과 같이 의결한다.	일부 경고 가결

[별지]

심의의결(안)

순번	구분	OSP명	게시물	게시자	저작물 종류	복제전송 형태	동종 게시물	의결 (안)
1	내부 모니터링	파일썸	[중점](영화)통과제리(2021)	qnf*	영상(영화)	직접전송	1건	가결
2	내부 모니터링	파일썸	[중점](영화)통과제리(2021)	qns*	영상(영화)	직접전송	1건	가결
3	내부 모니터링	파일썸	[중점](영화)통과제리(2021)	금*	영상(영화)	직접전송	1건	가결
4	내부 모니터링	파일썸	[중점](영화)통과제리(2021)	머*	영상(영화)	직접전송	1건	가결
5	내부 모니터링	온플레이	[중점](영화)통과제리(2021)	만호	영상(영화)	직접전송	1건	가결
6	내부 모니터링	파일몽	[중점](영화)통과제리(2021)	몽몽이	영상(영화)	직접전송	1건	가결
7	내부 모니터링	파일시티	[중점](영화)통과제리(2021)	im55511	영상(영화)	직접전송	1건	가결
8	내부 모니터링	파일시티	[중점](영화)통과제리(2021)	young07071	영상(영화)	직접전송	1건	가결
9	내부 모니터링	도도파일	[중점](영화)래시컴홈(2020)	gil20	영상(영화)	직접전송	1건	가결
10	내부 모니터링	도도파일	[중점](영화)고백(2020)	wldrn11	영상(영화)	직접전송	1건	가결
11	내부 모니터링	도도파일	[중점](영화)고백(2020)	민트스타	영상(영화)	직접전송	1건	가결
12	내부 모니터링	도도파일	[중점](영화)고백(2020)	불타는바나나	영상(영화)	직접전송	1건	가결

순번	구분	OSP명	게시물	게시자	저작물 종류	복제전송 형태	동종 게시물	의결 (안)
13	내부 모니터링	도도파일	[중점](영화)고백(2020)	이슬이슬667	영상(영화)	직접전송	1건	가결
14	내부 모니터링	도도파일	[중점](영화)스푸트닉(2020)	하은아빠v	영상(영화)	직접전송	1건	가결
15	내부 모니터링	빅파일	[중점](영화)아웃사이드더와이어(2020)	N_31585708	영상(영화)	직접전송	1건	가결
16	내부 모니터링	빅파일	[중점](영화)아웃사이드더와이어(2020)	gogopk2	영상(영화)	직접전송	2건	가결
17	내부 모니터링	도도파일	[중점](영화)웨이다운(2020)	odsakw	영상(영화)	직접전송	1건	가결
18	내부 모니터링	도도파일	[중점](영화)웨이다운(2020)	불타는바나나	영상(영화)	직접전송	1건	가결
19	내부 모니터링	도도파일	[중점](영화)웨이다운(2020)	턱걸이	영상(영화)	직접전송	1건	가결
20	내부 모니터링	도도파일	[중점](영화)라야와마지막드래곤(2020)	lee0522	영상(영화)	직접전송	1건	가결
21	내부 모니터링	파일조	[중점](영화)래시컴홈(2020)	뽀뽀의위트	영상(영화)	직접전송	1건	가결
22	내부 모니터링	메가파일	[중점](영화)늑대와빨간재킷(2020)	정다운90	영상(영화)	직접전송	1건	가결
23	내부 모니터링	파일노리	[중점](영화)바바야가:숲의악령(2020)	히미강한	영상(영화)	직접전송	1건	가결
24	내부 모니터링	파일노리	[중점](영화)몬스터헌터(2020)	pk3k3	영상(영화)	직접전송	1건	가결
25	내부 모니터링	파일노리	[중점](영화)몬스터헌터(2020)	teve	영상(영화)	직접전송	3건	가결

순번	구분	OSP명	게시물	게시자	저작물 종류	복제전송 형태	동종 게시물	의결 (안)
26	내부 모니터링	파일몽	[중점](영화)몬스터헌터(2020)	짐레이너	영상(영화)	직접전송	1건	가결
27	내부 모니터링	파일조	[중점](영화)몬스터헌터(2020)	뽀뽀의위트	영상(영화)	직접전송	1건	가결
28	내부 모니터링	피디팝	[중점](영화)몬스터헌터(2020)	post	영상(영화)	직접전송	1건	가결
29	내부 모니터링	찐플	[중점](영화)빛과철(2020)	고*	영상(영화)	직접전송	1건	가결
30	내부 모니터링	찐플	[중점](영화)빛과철(2020)	민*	영상(영화)	직접전송	1건	가결
31	내부 모니터링	파일썸	[중점](영화)로그시티(2020)	파*	영상(영화)	직접전송	1건	가결
32	내부 모니터링	파일노리	[중점](영화)어니스트씨프(2020)	o6m6e6n	영상(영화)	직접전송	1건	가결
33	내부 모니터링	파일조	[중점](영화)어니스트씨프(2020)	시냇가에심은 나무	영상(영화)	직접전송	1건	가결
34	내부 모니터링	찐플	[중점](영화)미션파서블(2020)	L.◆*	영상(영화)	직접전송	1건	가결
35	내부 모니터링	찐플	[중점](영화)미션파서블(2020)	fdn*	영상(영화)	직접전송	1건	가결
36	내부 모니터링	티플	[중점](영화)미션파서블(2020)	goodmov	영상(영화)	직접전송	1건	가결
37	내부 모니터링	파일몽	[중점](영화)미션파서블(2020)	WldrnWkd	영상(영화)	직접전송	1건	가결
38	내부 모니터링	파일썸	[중점](영화)미션파서블(2020)	qns*	영상(영화)	직접전송	1건	가결

순번	구분	OSP명	게시물	게시자	저작물 종류	복제전송 형태	동종 게시물	의결 (안)
39	내부 모니터링	피디팝	[중점](영화)미션파서블(2020)	post	영상(영화)	직접전송	1건	가결
40	내부 모니터링	도도파일	[중점](영화)아웃사이드더와이어(2020)	타락메김	영상(영화)	직접전송	1건	가결
게시물 총 건수 : 43건							43건	

※ 동종게시물은 복제.전송자가 OSP에 동일한 저작물을 동일한 방식으로 전송한 게시물의 합계임. 끝.